

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허가취소)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7조(허가의 취소 등) 및 제43조(청문)의 규정에 따라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하고자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4일
양 평 군 수

- 제 목: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허가 취소)을 위한 청문 알림
- 공시송달 대상업소

연번	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사항	행정처분 예정내용
1	식육포장 처리업	2016- 0378043	(주)장원푸드	김*숙	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길 249-12	폐업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	영업 허가취소
2	식육포장 처리업	2015- 0378338	농업회사법인 정원주식회사	이*정	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길 249-12	폐업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	영업 허가취소

- 공고기간: 2024. 3. 5.(화) ~ 2024. 3. 19.(화) (15일간)
- 관련근거 :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, 제27조 및 제43조
-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[영업허가취소](#)
- 청문일시·장소: 2024. 3. 20.(수) 14:00 / 양평군청 별관2층 청문장(일자리경제과 맞은편)
- 유의사항
 -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(영업허가취소)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아울러,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(제기)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문의처: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☎ 031)770-2516